서울과학기술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

서울과학기술대학교(기획평가과), 02-970-6066

제정 2012. 3. 1.

개정 2019. 10. 16.

개정 2021. 2.26.

개정 2021. 10. 1.

개정 2022. 7. 13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대학과 대학원의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
- 2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교직원, 학생, 전문가 중에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, 학부모 또는 동문을 포함할 수 있다.

- ②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(定數)의 10분의 3 이상, 구성단위별 위원은 1 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고, 관련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교를 대표 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

- 고,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.
- ④ 사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 - 1. 교원 2명 이내 (기획처장과 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추천)
 - 2. 학생 4명 이내 (총학생회와 일반대학원 학생회에서 추천)
 - 3. 외부 전문가 1명 이내. 다만,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.
 - 4. 학부모 또는 동문 1명 이내
-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기획평가과장이 된다.
- 제4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,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5조(위원장의 직무)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다.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이 아닌 교직원, 학생, 관련 전문가 등에게 회의 출석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교직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.
- 제6조(회의 등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0분의 4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-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·장소, 안건 및 회의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- 1. 회의 일시·장소 및 안건: 회의 개최 7일(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) 전까지 통지
 - 2. 회의자료: 회의 개최 5일(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) 전까지 송부
-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·보존하여야 한다.
- ⑤ 회의록은 회의한 날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본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1.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.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사항
- 3.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제7조(수당 등)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

제8조(관련 규정 등의 준용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고등교육

법」 제11조, 「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」을 준용한다.

부칙(제35호, 2012. 3. 1)

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495호, 2019. 10. 16.)

이 규정은 201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593호, 2021. 2. 26.)

이 규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639호, 2021. 10. 1.)

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696호, 2022. 7. 13.)

이 규정은 2022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.